

학교법인 선문학원 정관

(2012.05.04일 개정정관)

(2012.12.22일 개정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애천(愛天), 애인(愛人), 애국(愛國)의 건학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1>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선문학원(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1997.12.31-명칭변경>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선문대학교(鮮文大學校)
2. 선화예술고등학교(仙和藝術高等學校)
3. 선정고등학교(善正高等學校)
4. 선정관광고등학교(善正觀光高等學校) <개정 2007.3.1>
5. 선정중학교(善正中學校) <개정 2003.3.1>
6. 선화예술학교(仙和藝術學校)
7. 경북초등학교(景福初等學校)
8. 선화유치원(仙和幼稚園) <신설 1997.12.31>

제4조(주소) 이 법인은 다음과 같이 사무소를 둔다. <개정 1998.5.14>

- ① 본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664에 둔다. <개정 2012.12.22>
- ② 다음과 같이 분사무소를 둔다.
 1. 충남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21번길 70 <개정 2012.12.22>
 2.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277 <신설 2002.6.26> <개정 2012.12.22>

제5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14일 이내에 이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07.11.30> <개정 2008.4.14> <개정 2012.12.22>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개정 2011.2.11>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개정 2007.11.30〉
- ③보통 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법인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13조(예산결산 보고 및 공시) ①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11.17〉
②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삭제 2006.11.17〉

제15조〈삭제 2006.11.17〉

제16조〈삭제 2006.11.17〉

제17조〈삭제 2006.11.17〉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 사 : 12인<개정 1997.12.31, 2006.4.19, 2007.11.30>

감 사 : 2인

②제1항의 이사 중 3인은 개방이사로 한다.<신설 2006.11.17><개정 2007.11.30>

③상근하는 임원으로 이사장 및 이사 2인을 둘 수 있다.<개정 2007.11.30-항 변경>

제19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사 : 5년

2. 감 사 : 3년(단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개정 2006.11.17>

②<삭제 2002.2.15>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대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06.11.17>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개정 2005.7.25>

③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건학이념구현에 적합한 인사로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정회원 이어야 한다.<신설 2006.11.17>

제20조의3(개방이사의 선임) ①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재직이사는 임기만료 3개월 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의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06.11.17><개정 2007.11.30>

②법인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정관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위원회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여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개정 2007.11.30>

④그 밖에 초중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및 대학평의위원회에서의 개방이사 추천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각 학교운영위원회규정 또는 대학평의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의4(추천위원회) ①추천위원회는 선문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에 두되, 별도 조직으로 운영한다.

②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문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2. 선화예술학교·선화예술고등학교 및 경북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3. 선정중고등학교 및 선정관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 4.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3인
- ③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④추천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1.30-제20조의4 전체내용>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이사 정수의 과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 ②이사회에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0.8.7, 2006.11.17>
- ③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 ④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2000.8.7>
- ⑤<삭제 2012.12.22>
- ⑥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다만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4.14>
-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6.11.17>
 -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
 -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개정 2005.7.25>

-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③<삭제 2007.11.30>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2.12.22>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에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26조(임원의 겸직금지)** ①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07.11.30〉
- ②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 ③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제26조의2(임원의 보수제한) 학교법인의 임원 중 상근하는 이사장 및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신설 2008.4.14〉〈개정 2009.11.17〉

제2절 이사회

- 제27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조교임면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03.4.8-단서 추가〉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28조(이사회 개최 및 의결 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개정 2006.11.17〉
- ②이사회 의결은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11.17〉

- 제29조(이사회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 제30조(이사회 소집)** ①이사회에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31조(이사회 소집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를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6.11.17>

제31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①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6.11.17><개정 2007.11.30>

②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7.11.30>

제4장 수익사업

제32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업(토지, 건물의 임대, 부동산 개발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포함)<개정 2009.6.3, 2011.2.11>
2. 금융업 및 주식투자
3. 수산업
4. 축산업 및 임산업
5. 유류업 및 기타 서어비스
6. 도매, 제조, 서비스 회사에 출자
7. 용역업(경비, 청소, 주차, 방역)<신설 2011.2.11>
8. 근로자 과견업<신설 2011.2.11>
9. 제1호 내지 제8호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제33조(수익사업의 명칭 및 주소) 제32조의 사업을 위해서는 법인이 직접 경영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명칭과 사업장의 주소를 정한다.

1. 선정테니스장 :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27길 45-4<개정 2012.12.22>
- 2.<삭제 2000.10.26>
3. 구의동 썬-타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670<신설 2007.3.20><개정 2012.12.22>
4. 신문로 썬-타워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길 26<개정 2012.12.22>
5. 갈현동 주택 :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22길 14<신설 2012.12.22>

제34조(관리인) ①제32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해산

제35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37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4.14>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명

제38조(임면 및 학교의 장의 임기 등) 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대학교 총장은 4년, 유치원장은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며, 초·중등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3.10.20, 2006.4.19, 2006.11.17, 2007.11.30>

②제1항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임용기간 1년 이하 비정규직 교원은 총장이 임용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2.6.26, 2003.4.8, 2006.11.17, 2012.12.22>

1. 근무 기간

가.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해당 대학의 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6.3>

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 : 3년 이하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06.11.17> <개정 2012.12.22>

2. 급여 : 정관 제45조로 정하는 보수 및 수당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 학과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는 따로 정한다.

- ③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학부장) 및 실처장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3.10.20〉
- ④〈삭제 2003.4.8〉
- ⑤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교를 둘 수 있으며 임면과 운영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1.11.12〉
- ⑦본조 제1항과 제2항의 교원 중 의원면직 및 정년퇴직과 사망에 의한 면직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신설 2001.11.12〉
- ⑧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이때 공개전형 지원응시 수 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11.30〉

제39조(기간제 교원) ①임면권자는 고등학교 이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그 임면권은 학교장에 위임한다. 기간제교원의 임면에 관한 절차는 정관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11.17, 2011.2.11〉

- 1. 교원이 제40조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 2. 교원이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휴가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 3.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 4. 교원 퇴직시 신규 채용할 임용대상자가 없을 때
 - 5. 파면, 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재심을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 ②기간제 교원은 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 ③〈삭제 2011.2.11〉

제2관 신분보장

제40조(휴직의 사유) 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 명한다.〈개정 2000.8.7〉

-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3. 천재지변 또는 전사·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5. 학위 취득의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03.4.8〉
- 6.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 7. 자녀(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개정 2000.8.7, 2007.11.30〉
-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9.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조전임자로 선출된 자〈신설 2000.8.7〉
- 10.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신설 2003.4.8〉

11.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신설 2003.4.8>
 12. 대학소속교원이 이 학원이 설치·경영하는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의 장에 임용되었을 때
 <신설 2003.4.8>
- ②제1항 중 제7호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한 휴직에 대하여는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동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신설 2000.8.7><개정 2003.4.8>

제41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 같다.

1.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한다.
3. 제4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
4. 제4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0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3.10.20>
7. 제40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40조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신설 2003.4.8>
9. 제40조 제1항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3.4.8>
10. 제40조 제1항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3.4.8>
11. 제40조 제1항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임용기간으로 한다.<신설 2003.4.8>

제42조(휴직교원의 신분) ①휴직 중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로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③제40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로 복귀를 신고할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3조(휴직 교원의 처우) ①제4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5할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전액을,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개정 2003.10.20, 2011.2.11>

- ②제4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4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신설 2002.6.26>

- ②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량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④제1항 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 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 ⑤임면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
-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 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⑧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5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위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교원의 정년) 교원의 정년은 정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1.17>

제47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제48조(명예퇴직수당) ①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학교의 교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1년 이상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②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③재직 중 특히, 공적이 현저한 자가 상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 할 때에는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7.11.30>

제49조(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50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초등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제51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6.11.17〉

1. 총장이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면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2. 제38조 제2항에 정한 교원 임용의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대학교의 인사위원회가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대학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 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③제1항 이외의 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2조(인사위원회의 조직) ①인사위원회는 대학교의 경우 총장이 임명하는 7인의 교원으로, 중등학교 및 각종 학교는 교장이 임명하는 5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개정 2003.10.20〉

②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3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개정 1998.5.14, 1999.3.1, 2001.11.12〉〈단서 삭제 2006.11.17〉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54조(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①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5조(회의록 작성) ①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56조(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57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8조(교원징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인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신설 2002.6.26〉

②교원의 징계위원회는 5인 위원으로 조직한다.

③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선화유치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신설 2000.8.7〉

⑤정관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요청한 임시위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사장이 임명한다.〈신설 2007.11.30〉

제59조(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0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1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2조(위원의 기피 등) ①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3조(징계의결 요구 사유통지)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4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5조(징계 의결)** ①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징계처분권자는 이사장이 된다.<개정 2000.8.7, 2003.10.20>
 ④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6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 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 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7조(징계사유의 시효) 교원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행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68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법인소속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03.10.20>

제69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사무직원

제70조(자격)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기능직 및 고용직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②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 ③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 한다.

제71조(임용) ①일반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근속승진, 대우직원,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

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7.7.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72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선문학원 인사규정에 따르며, 규정 이외의 사항은 사립학교 교원에
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3.4.8>

제73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
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74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5조(일반직원의 정년) 일반직원의 정년은 정관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3.1, 2006.11.17>

제76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
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해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77조(법인 사무조직) ①법인에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비서실, 법인대학사무국, 초중등사무국을 두
고, 실·국장은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한다.<개정 2003.4.8>

②각 실 및 국에 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주사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03.4.8>

③<삭제 2003.4.8>

④<삭제 2000.10.26>

⑤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분장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3.4.8>

제2절 대학교

제78조(총장 등) ①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③대학교에 대학원부총장, 교무·행정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로 임명한다.<개정
1998.5.14, 2011.2.11>

④건학이념 구현을 위하여 특수임무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비전임 교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다.<신설
2011.2.11>

⑤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 유고시 제3항의 순서에 의하여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1999.3.1><개정 2011.2.11>

⑥부총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신설 2011.2.11>

제79조(학장(학부장), 대학원장) ①대학교의 각 단과대학(학부)에 학장(학부장)을, 대학원에 대학원장을 둔다.<개정 2003.10.20>

②학장(학부장)과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개정 2003.10.20>

③학장(학부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단과대학(학부) 또는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개정 2003.10.20>

제80조(하부조직) ①대학교에 총장의 직속기관으로 교목실, 비서실, 산학협력단, 장학발전기금본부, 대학정책본부, 시설관리본부, 글로벌다문화교육센터 등을 두며, 대학본부로 기획처, 교무처, 학생지원처, 입학관리처, 홍보대외협력처, 국제교류교육처, 사무처를 두며 직속기관 및 본부 실·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참사(4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1999.3.1, 2000.2.19(팀제), 2001.3.1(비서실신설), 2006.4.19(연구정보처삭제), 2008.3.25, 2011.2.11, 2012.12.22>

②본부 및 각 처(실)에 4개 이내의 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 및 분장업무는 직제규정에 따로 정한다.

④내지 ⑩<삭제 2002.6.26>

제81조(단과대학 등의 하부조직) ①단과대학 및 학부에 교학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03.10.20>

②대학원에는 교학부와 교학팀을 둘 수 있으며, 부장은 교원으로, 팀장은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03.10.20>

제82조(부속시설 등) ①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 부설 교육기관 및 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부속기관, 부설 교육기관 및 연구소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 등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보한다.

③부속기관, 부설 교육기관 및 연구소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부속기관, 부설 교육기관 및 연구소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업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2조의2(산학협력단) 산업 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 내에 산학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총장의 직속기관으로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신설 2003.10.20>

제83조(중앙도서관) ①중앙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 및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6.4.19>

제3절 고등학교

- 제84조(교장 등)** ①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 또는 교감 2인을 둔다.<개정 1998.5.14>
②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5조(하부조직)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부참사 또는 주사로 보하고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3.1, 2006.11.17>

제4절 중학교

- 제86조(교장 등)** ①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7조(하부조직) 중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주사로 보하고 그 분장 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3.1, 2006.11.17>

제5절 초등학교

- 제88조(교장 등)** ①초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9조(하부조직) 초등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부참사 또는 주사로 보하고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3.1, 2006.11.17, 2007.7.27>

제6절 각종학교

- 제90조(교장 등)** ①예술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②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1조(하부조직) 예술학교에 행정실을 두며 실장은 주사로 보하고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3.1, 2006.11.17>

제7절 유치원<신설 1997.12.31>

제92조(원장 등) ①유치원에 원장 1인과 원감 1인을 둔다.

②원장은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원생을 지도하고 유치원을 대표한다.

③원감은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3조(하부조직) 유치원에 서무과를 두며 과장은 주사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절 정원

제94조(정원) 법인 및 각 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총 정원은 각각 【별표 1】 내지 【별표 3】 과 같으며, 각 직급별 세부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11.17>

제8장 학교 운영위원회<신설 2000.7.5>

제95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중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학교는 이를 설치한다.

제96조(위원정수 및 구성)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그 구성 비율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참조하여 당해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수 기준일은 매년 3월 1일로 한다.

제97조(위원선출 및 위촉) ①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2배수로 선출한 교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③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 자를 학교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④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자를 학교장이 위촉한다.

⑤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 또는 위촉한다.

⑥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 또는 위촉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 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98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99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②학부모위원은 선출일 현재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임 중인 전임교원으로 한다.

③지역위원은 당해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100조(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1조(위원의 자격상실)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 학교를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전학·퇴학한 때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 학부모 위원의 선출과정에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②제1항 제4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

제102조(기능 등)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2.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4.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6.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9.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신설 2007.3.20><개정 2007.11.30>
10.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신설 2007.3.20>
11. 기타 학교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103조(시행 의무 등) ①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

102조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4조(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신설 2001.3.1>

제105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한다) 제6조 제4항에 의거 범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 중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학교는 이를 설치 운영한다.

제106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세부사항 등)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대학평의위원회<신설 2006.11.17>

제107조(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08조(평의위원회의 구성) ①평의위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 4명
2. 직원 3명
3. 학생 1명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3명

②평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9조(평의원의 위촉) 평의원의 위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2.11>
2.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2.11>
3.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2.11>
4.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제110조(평의위원회 의장 등) ①평의위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111조(평의원의 임기) ①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108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보선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2조(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는 자문에 한한다.<개정 2007.11.30>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3조(운영규정) 평의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장 보칙

제114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지에 공고한다.

제11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16조(설립당초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임기	주소
이사장	박보희	1930. 8. 18	5년	서울시 중구 신당동 432-1
이 사	이은상	1903.10. 12	5년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104-43
이 사	김원필	1928. 9. 2	5년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89-67
이 사	최원복	1916. 6. 6	3년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72-2
이 사	문승균	1921. 4. 21	3년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934-13
감 사	곽정환	1936. 1. 22	2년	서울시 성동구 구의동 52-7
감 사	박봉애	1903. 9. 10	1년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263-8

부칙<대학 81422-1588호, 1997.12.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된 정관은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교법인 선문학원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선문대학교의

교,직원과 법인의 직원은 이 정관에 의해 합병되어 존속하는 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제3조(총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교법인 선문학원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선문대학교 총장은 그 임기 만료 시까지 이 정관에 의해 합병되어 존속하는 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

부칙<대학 81422-400호, 1998.5.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1998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 81422-243호, 1999.02.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행 81422-410호, 1999.8.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1999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행 81422-248호, 2000.2.19>

제1조(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2000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행 81422-1109호, 2000.7.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제정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제정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학교장이 정한다.

제3조(최초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 및 만료시기)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한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 부터 개시 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부칙<대행 81422-1295호, 2000.8.7>

제1조(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2000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행 81422-1662호, 2000.10.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200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재 81422-242호, 2001.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재 81422-1352호, 2001.11.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2001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재 81422-184호, 2002.2.15>

제1조(시행일) 이 개정정관은 200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재 81423-882호, 2002.6.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제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신규채용자부터 적용하며, 2001년 12월 31일까지 임용되어 재직 중인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재직 중인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지침을 준용한다. 다만 근무기간을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가. 교 수 : 정년
- 나. 부 교 수 : 6년
- 다. 조 교 수 : 3년
- 라. 전임강사 : 2년

부칙<대재 81422-1586호, 2003.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재 81422-522호, 2003.4.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학 81422-1448호, 2003.10.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8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임 중인 유치원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부칙<사학지원과-797호, 2004.4.1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학지원과-5087호, 2005.7.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립대학지원과-2405호, 2006.4.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립대학지원과-6289호, 2006.11.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는 제19조 제1항 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감사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사립대학지원과-1376호, 2007.3.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팀-내113호, 2007.7.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립대학지원과-5428호, 2007.11.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정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제18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대학경영지원과-450호, 2008.4.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립대학지원과-590호, 2009.6.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립대학지원과-4071호, 2009.11.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립대학지원과-840호, 2011.2.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선문학원 이사회 - 2012.12.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인 일반 정원

총 계	37명
일반직	24명
기술직	2명
기능직	11명

【별표 2】 선문대학교 사무직원

총 계	120명
일반직	86명
기술직	24명
기능직	10명

【별표 3】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사무직원

구 분	선화예술 고등학교	선 정 고등학교	선정관광 고등학교	선 정 중학교	선 화 예술학교	경 복 초등학교	선 화 유치원
총 계	25명	6명	5명	5명	15명	20명	5명
일반직	3명	3명	2명	2명	2명	5명	2명
기능직	13명	3명	3명	3명	8명	14명	2명
예능직	9명	-	-	-	5명	-	-
보건직	-	-	-	-	-	1명	1명